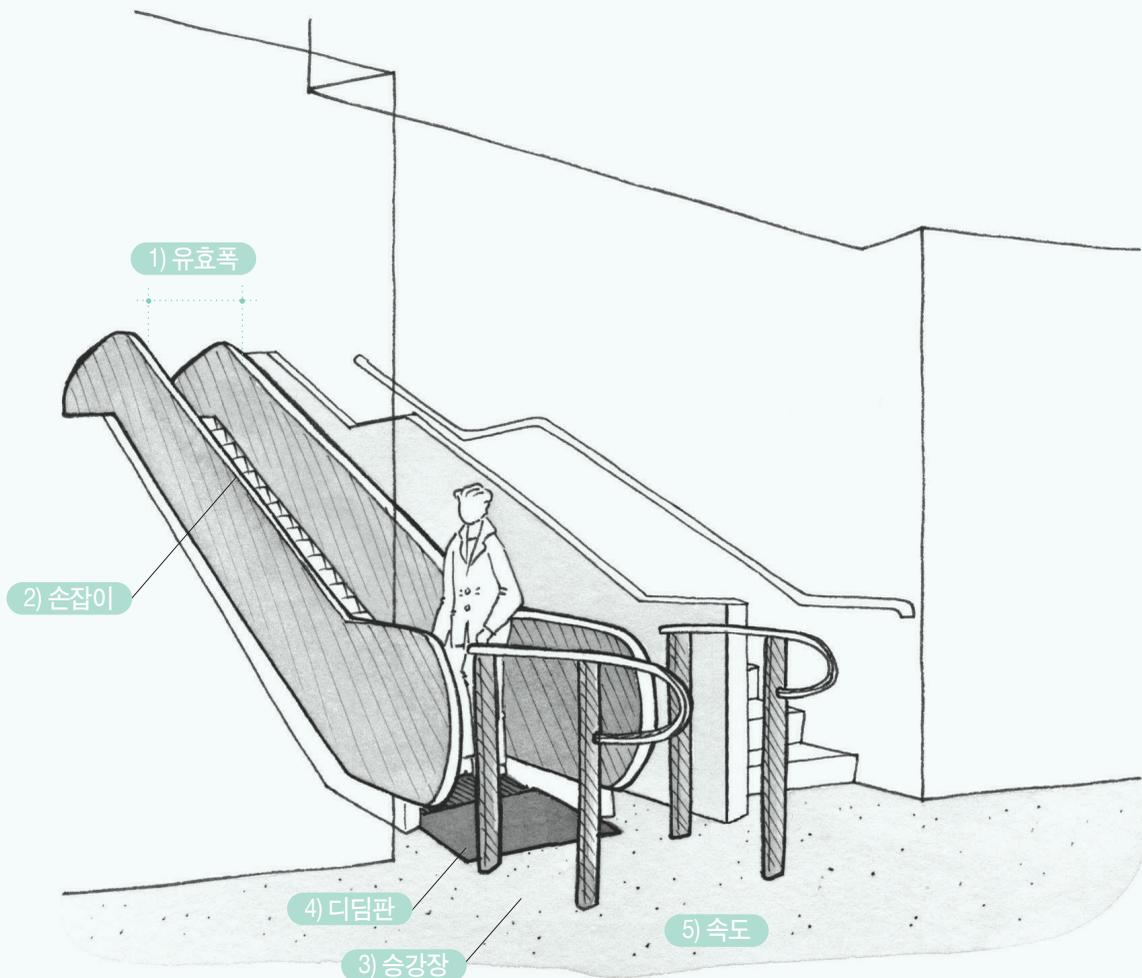


## 9. 에스컬레이터



### ■ 설치원칙

보행장애인, 시각장애인, 노인 등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위험이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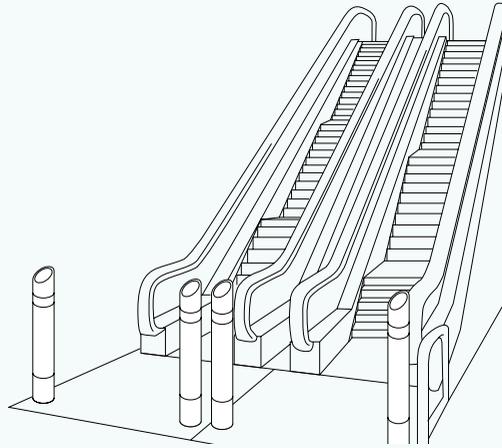
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에스컬레이터란 휠체어 바퀴 고정장치 등 특수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.

### ■ 설치요점

- 정지상태에서 휠체어를 고정시킨 후 안전장치가 확인된 후에 작동되어야 한다.
- 휠체어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동 보조인이 동승하여 운행해야 한다.
-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인 경우에도 가까운 거리에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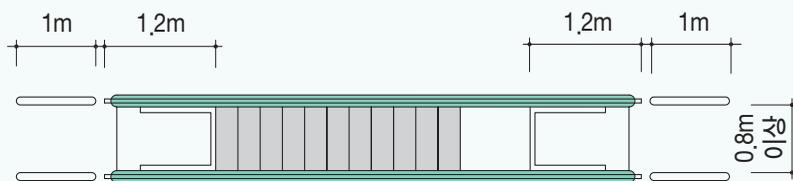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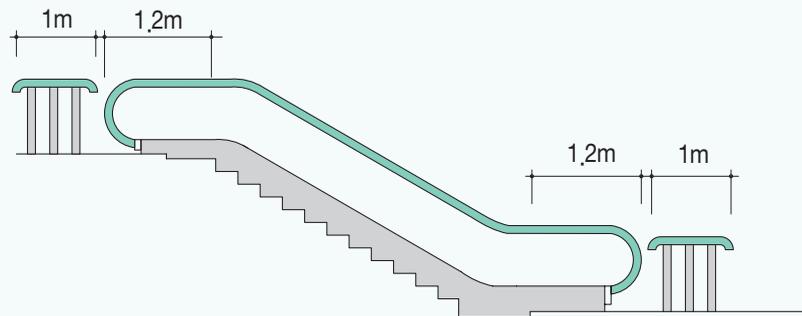
1) 유효폭

-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.8m이상이다.
- 유효폭 1.2m이상은 양측 손잡이를 잡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

2) 손잡이

- 에스컬레이터 양측면에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손잡이를 설치한다.
- 손잡이는 움켜잡기에 용이한 형태와 구조로 되어야 한다.
- 에스컬레이터 양끝 부분에는 수평이동 손잡이를 1.2m이상 설치해야 한다.
- 시작과 끝지점에는 높이 0.85m±5cm, 길이 1m이상의 수평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층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시를 해야 한다.



### 3) 승강장

- 승강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주변 바닥마감재와는 질감, 색상 등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.
- 승강장 전면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.4m×1.4m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수평 고정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 시작지점 이전을 휠체어 활동공간으로 본다.

### 4) 디딤판

- 휠체어를 수평으로 고정시킨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을 3매 이상 또는 1.2m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- 디딤판의 끝부분은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색상, 재료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.

### 5) 속도

-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1분당 30m 이내로 해야 한다.